[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 공고 제 2026-67호]

2026년 하반기 통계조사관 추가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심사 일정 공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에서 근무할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조사관 추가 채용과 관련하여 서류심사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심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

---

1. 서류심사 합격자 명단(6명)

응시번호	성명	응시번호	성명
N1-07327	문O주	N1-07370	김O빈
N1-07367	신O솜	N1-07390	김O화
N1-07369	이O정	N1-07392	전O애

※ 상기 명단은 응시번호 순으로 기재

2. 면접심사 일정

○ 일시: **2026. 11. 12.(목) 14:00**

○ 장소: **서울북부지청 3층 소회의실[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949(번동)]**

※ 면접 대기장소: 서울북부지청 3층 지역협력과

○ 대상: 서류심사 합격자 6명

3. 면접심사 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필수, 주민등록번호 포함)**

○ **업무 관련 교육(관련 교과목 또는 직업교육훈련) 이수 증명서류 각 1부(해당자)**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모집 분야와 관련된 컴퓨터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서류 각 1부(해당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저소득층 확인 증명서 1부(해당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상기 제출 서류 이외에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해당자)**

4. 면접시험 대상자 유의사항

○ 면접시험 대상자는 신분증 및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면접시작 **10분 전**까지 **대기장소(서울북부지청 3층 지역협력과)**에 도착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통계조사관 면접심사 일정 확인

○ 면접시험 대상자는 면접시험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지정된 면접일자 및 시간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5.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1. 13.(금)**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서울북부고용복지+센터, 강북성북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예정

※ 최종합격자는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6. 기타 안내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구비서류는 **면접 대기 장소에서 면접 10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반환청구기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붙임 2]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서식 활용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담당자(☎ 02-950-97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26년 하반기 통계조사관 채용 면접심사 일정

면접일시	응시자명단	비고
11.12.(목) 14:00	문O주 신O솜 이O정 김O빈 김O화 전O애	13시 50분까지 면접 대기장소 도착

※ 면접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면접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별 면접심사 순서에 따라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접대기장소: 서울북부지청 3층 지역협력과 (서울 강북구 한천로 949)

※ 면접장소: 서울북부지청 3층 소회의실 (서울 강북구 한천로 949)

[붙임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